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5·18민주유공자예우
및
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권오을 (국가보훈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취업지원 실시기관이 보훈특별고용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미이행하거나 고용에 관한 사항 신고의무를 미이행하는 등 의무고용과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위반행위와 부과금액만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위반횟수 및 위반양태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부과하도록 부과기준을 세분하고 구체화하여 각 기관의 의무위반시 행정청이 적극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,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습관적 의무 재위반을 방지하여 의무고용 제도준수를 적극 유도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
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■ 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[별표 4]

과태료의 부과기준(제61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
나.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한다. 단, 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적용한다.

다. 부과권자는 다음 1) 내지 4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. 다만,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- 1) 위반행위자가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」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- 2)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- 3)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
- 4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과태료 금액 (단위: 만원)		
		1차	2차	3차 이상
가.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1호			
1)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100	200	300
2)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		200	250	300
나.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	법 제100조	200	250	300

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·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	제3항제2호			
다.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00조 제1항	1,000	1,000	1,000
라.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3호	200	250	300
마.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1호	500		
바.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2호	500		
사.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·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·기피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3호	500		
아.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·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4호	500		
자.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4호	300		
차. 법 제82조에 따른 재무·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	법 제100조 제2항제5호	500		
카. 법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	법 제100조 제3항제5호	300		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	
연 락 처	(044) 202 - 5651